## 주택건설(또는 대지조성)사업자 등록증

(앞 쪽)

사 업 자	상호			
	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	생년월일		
	영업소소재지	등록일자		

「주택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(또는 대지조성)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협회장 직인

- ※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※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은 이면에 기재합니다.

## 등록사항변경 기재란

 구 분	등록내용	변경내용	변 경 일	확 인	비고